

2026. 6. 15
제 1738 호



법원
공보

법원행정처

법원공보

2026년 6월 15일(월요일)

제1738호

CONTENTS

●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53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865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871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87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874
●	내규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876
●	예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895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897
●	신법령 목록		899
●	인사		908

■ 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57호 2026. 6. 5. 공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1의5, 별표 2의1, 별표 3의3,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4 및 별표 5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실 장	심의관	담당관	분 장 사 무
기획 조정 실장	기획총괄		1.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보좌 2.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기획조정		1. 기획담당관, 기획운영담당관, 법무담당관 업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2. 기획조정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3. 법원행정처의 공직윤리·감사 관련 업무
		기획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4.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
		기획운영	1. 법원의 신설, 승격, 이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사법행정자문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지원 4.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5. 각급 법원 건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법무	1.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개폐 2. 법령안 의견회신에 대한 조정총괄 및 다른 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법령질의 회답 3.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내 연수(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연수 포함)에 관한 계획의 총괄 및 조정과 그 집행(단, 인사운영·인사협력 심의관 분장사무는 제외) 4. 법원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소송 5.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6. 사법행정자료의 수집, 분석,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국제총괄		1. 외국 사법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2. 외국 법조인 등의 대법원 방문 계획 수립 및 집행 3. 외국 법관 등에 대한 연수 계획 수립 및 집행 4. 법관 및 법원직원의 국제화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5. 국제회의의 참가 및 직무상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6.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제 관련 업무로서 다른 실·국·과의 분장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 장	심의관	담당관	분 장 사 무
기획 조정 실장	조직		1. 조직, 정원관리 및 차량정수관리 2. 보수 및 수당의 조정 3. 사법행정관리의 개선 및 조직혁신업무 4. 제안제도의 운영 5. 민원서비스 개선업무 총괄 6.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예산	예산의 편성, 예산 및 자금의 배정 및 조정, 결산, 회계검사(단, 예산집행 현황 파악 및 차년도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한 수시회계검사에 한함)
		시설	1. 사법시설의 설치, 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기술	1.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2. 전기·기계 등 설비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3. 사법시설 보수공사의 설계 검토 및 시공 감독 4. 사법시설의 사용·유지에 관한 기술적 사항 5. 고등법원의 사무국 시설과 분장사무 중 기술담당관이 관장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청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사법 정보화 실장	사법 정보화 총괄		1.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정보화실 내 부서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내지 수행 3.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기획		1. 사법정보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정보화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사법통계의 제공,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사법 인공 지능		1. 사법 인공지능정책 수립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3. 다른 실·국의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인공지능시스템 반영 내지 개발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1. 사법정보화 예산 및 결산, 계약 등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 보좌 2. 사법·사법행정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3.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단, 사법등기심의관 분장 사무 제외) 4. 사법정보통신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법정보화실 업무에 관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관리 운영	1. 대법원전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사법정보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사무용, 법정용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화 운영	1. 사법정보화 사업 운영 전략 수립, 시스템관리 등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판사무·전자소송·공탁·집행관 등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관련 업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법정보화 사업 품질관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장사무
사법 정보화 실장		정보화 지원	1. 데이터센터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각급 법원 데이터센터 관련 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사법행정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정보 보호	1. 사법부 정보화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2. 사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3.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전자법정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사항 5. 사법부 가상화시스템 보급,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업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법정보화실장이 지정한 업무

[별표 1의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

실장	심의관	담당관	분 장 사 무
행정 관리 실장	인사협력		1. 법원직원의 인사집행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법원직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3. 5급 이하 법원직원의 평정 및 근무성적평정조정에 관한 사항 4. 5급 이하 법원직원의 국내연수(사법연수원 및 법원 공무원교육원 연수에 한함) 집행에 관한 사항 5. 법원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6.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 총괄
		총무	1. 기밀 및 당직에 관한 사항 2. 관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문서(재판문서 제외)의 통제, 수발과 보존에 관한 사항 4. 의식 및 의전에 관한 사항 5. 청사의 배정 및 보안에 관한 사항(단, 비상계획관 분장사무 제외) 6. 청사(회의실 제외)의 사용, 유지에 관한 사항(직할 청사의 대여에 관한 사항 포함) 7. 차량의 운영 및 관리직공무원의 감독에 관한 사항 8.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9. 기타 타 실·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재무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제세입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구입·출납·보관·관리 및 영치물에 관한 사항
		복지 후생	1. 복지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법관 및 법원직원 등의 4대보험,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4. 회의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의 환경미화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별표 1의5]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국명	심의관	과명	분장사무
사 법 등 기 국	사법 등기		1.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에 관한 조사연구 등 사법등기국장 업무 보좌 2. 등기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의 계획 및 사법등기국 소관 업무의 전산화·정보화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3. 공탁 및 상업등기(민법법인, 특수법인,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포함)에 관한 사항 4. 등기전산화 사업 계약 등에 관한 사항 5. 각 등기소 등기전산장비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6. 각 등기소 등기전산망 보급, 운영,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 등록	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 집행관에 관한 사항 3.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 4. 사법등기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동산 등기	1. 부동산등기(사법등기심의관의 상업등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등기 및 등록 포함)에 관한 사항 2.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등기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재산조회 회신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1. 대법원등기정보센터의 관리, 운영, 서무 등에 관한 사항 2. 등기·가족관계등록관련 업무의 정보화시스템의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등기·가족관계등록관련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4. 등기·가족관계등록 정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한 업무지원
재 판 사 무 국		종합 민원	1. 재판사무 및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민원처리, 질의회신 및 민원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 및 청원에 관한 사항 3.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접수 및 등사 교부에 관한 사항 4. 재판사무국 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국명	심의관	과명	분장사무
재 판 사 무 국		민사	1. 민사, 행정, 가사, 특히 기타 사건(다음부터 '민사등'이라고 함)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민사 등 사건의 심판 참여 및 문서작성에 관한 사항 3. 민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민사 등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등 포함)
		형사	1. 형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인신보호 사건(다음부터 '형사 등'이라고 함)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 등 사건 심판의 참여·기록과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3. 형사 등 사건 기록과 부책의 정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의 형사 등 사건 사무에 종사하는 일반직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중요사건보고, 파기사건 분석 포함)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총무과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 청사의 유지, 관리 및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수과	1. 법관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관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관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신입법관연수의 평가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법연수생 수습(위탁교육 포함, 이하 같다)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6. 사법연수생 수습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법연수생 수습 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8. 사법연수생 수습의 평가시험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재판연구원(후보자), 사법보좌관(후보자) 등 기타 재판 관련 전문가 연수에 관한 사항 10.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법실무교육 등 각종 연수 및 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1. 외국법관 등에 대한 연수 및 국제사법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교사 등 일반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에 관한 사항 13. 법원실무제요, 재판실무편람, 기본법률총서, 심화연구총서 등을 비롯한 교재 및 실무지침서 제작·발간에 관한 사항 14. 법정언행컨설팅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15. 법관연수 이러닝센터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3의3]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명	분장사무
총무과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사무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특허과	1. 특허 등에 관한 사건의 접수처리, 심판의 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에 관한 사항 2. 기록 및 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별표 5의4]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법원별	국명	과명
서울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종합민원실, 개인회생1과, 개인회생2과, 파산과
수원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개인회생과, 파산과
부산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대전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대구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광주회생법원	사무국	총무과, 파산개인회생과

[별표 5의5]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 명	분장사무
총 무 과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 통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합민원실	1.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접수 2.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접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접수 3. 채권신고 접수 4. 민원안내
파 산 과	1.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3.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4.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개 인 회 생 과	1.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3.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파산 개인회생과	1. 법인·일반회생사건, 법인파산사건, 개인파산·면책사건, 국제도산 사건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민사·신청·비송사건의 처리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회사정리·화의사건의 처리 3. 개인회생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신청·비송사건의 처리 4.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집회 및 심문기일의 참여 6. 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7. 채권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 ※ (1)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회생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 파산과, 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는 지방법원 사무국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또는 개인회생과에서 관장한다.
 (2) 종합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회생법원의 경우 종합민원실의 분장사무 중 제1호, 제2호, 제3호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
 (3) 개인회생과가 개인회생1과, 개인회생2과 등으로 분과된 회생법원의 각과는 개인회생과의 분장사무를 분할하여 각각 관장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58호 2026. 6. 5. 공포)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별표 9 제1호 기술정보수당 및 제4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를 “(별표 9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같은 표 제4호의 재판수당 및 같은 표 제13호의 법관 장기재직장려수당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1. 기술정보 수당	1) 일반직공무원 중 사법행정 직군의 전산직렬과 기술심리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직렬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기술직군 중 관리직렬에 속하는 6급 및 7급에게는 월 10,000원 이하, 8급 및 9급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전산업무(천·검공 및 자료 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연구업무 수당	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 교육원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를 제외한다)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월 6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40,000원 이하
	2) 사법연수원의 원장, 부원장, 교수 및 국장과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원장, 국장, 교수 및 전임강사		월 110,000원
	3)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3. 합숙생활 지도수당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정규근무 시간 외에 피교육자의 합숙생활지도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1일밤: 5,000원
4. 재판수당	재판 및 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관		대법원장·대법관·법조경력 30년 이상인 법관: 월 400,000원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법관: 월 250,000원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법관: 월 200,000원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법관: 월 100,000원 (법조경력이란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력 중 판사임용 시 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과 제4항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가산금〉 동일한 사무분담에 2년차 이상 보임하는 법관(재판장의 경우 3년차 이상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에게는 직무의 내용·곤란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요건, 지급액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 민원업무 수당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6. 재판업무 수당	1) 기술심리관과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재판 및 동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5급~9급 공무원 (다만, 2013. 12. 12.자로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렬의 공무원은 제외)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기술심리관 : 월 80,000원 이하 5~9급 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가산금〉 형사재판부에서 재판참여, 참여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5~9급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속기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3)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월 80,000원
	4) 사법보좌관		월 80,000원
7. 의료업무 수당	간호사로서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8. 사서수당	사서직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5급 이상 :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 월 30,000원 이하
9. 등기업무 수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등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등기소장이나 과장이 아닌 5급, 6급 이하의 공무원	지급범위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70,000원 이하
10. 시간제 근무 수당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법원공무원규칙」제68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의 지급 범위 및 지급액의 구체적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금액

구분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11. 전문 직위 수당	「법원공무원규칙」제51조의2에 따라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table><tr><th rowspan="2">근무기간</th><th colspan="2">월 지급 상한액</th></tr><tr><th>4급 이상</th><th>5급 이하</th></tr><tr><td>1년 미만</td><td>100,000원</td><td>70,000원</td></tr><tr><td>1년이상 2년 미만</td><td>120,000원</td><td>90,000원</td></tr><tr><td>2년이상 3년 미만</td><td>180,000원</td><td>150,000원</td></tr><tr><td>3년이상 4년 미만</td><td>300,000원</td><td>250,000원</td></tr><tr><td>4년 이상</td><td>450,000원</td><td>400,000원</td></tr></table>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12. 중요 직무급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27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table><tr><th>지급대상</th><th>월 지급 상한액</th></tr><tr><td>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td><td>200,000원</td></tr><tr><td>5급(상당)공무원</td><td>150,000원</td></tr><tr><td>6급(상당) 이하 공무원</td><td>100,000원</td></tr></table>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지급대상	월 지급 상한액																						
3급(상당) 또는 4급(상당)공무원	200,000원																						
5급(상당)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13. 법관 장기 재직 장려 수당	1회 이상 연임된 법관으로서 법조경력이 15년 이상 법관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월 50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259호 2026. 6. 5.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0호 2026. 6. 5.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15장에 제92조의2를 제92조의3으로 하고, 제1편 제14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185조제2항에 따라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14장 증거보전	제14장 증거보전
〈신 설〉	제92조의2(서류의 열람 등) ① 법 제185조제2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18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 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법 제185조제3항,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 및 증거물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장 소송비용	제15장 소송비용
제92조의2 (생 략)	제92조의3 (현행 제92조의2와 같음)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61호 2026. 6. 5. 공포)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전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전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전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8조의2(전자정보 보존 기간 연장 허가 업무 담당판사) 전자정보 보존 기간 연장의 허가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신 설〉	제108조의3(전자정보 보존 기간 연장 허가의 절차) ① 검사가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존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전자정보보존기간연장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정보보존기간연장허가청구서에는 보존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와 연장을 구하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내규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42호 2026. 6. 1. 결재)

대법원청사 출입에 관한 내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청사(다음부터 ‘청사’라 한다)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의 절차, 출입증의 발급 등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내규에 따라 발급된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청사 출입은 법정 출입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내규에서 정함이 없는 청사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에 따른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3조(출입증의 종류·규격·서식) ①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증
2. 기간제 및 공무원직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공무원직원증
3. 상시출입증
4. 임시출입증
5. 방문증

② 제1항제1호·제2호는 청사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④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의 신청·교부) ① 방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방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청사출입구 보안관리대원에게 접수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모바일 신분증을 포함한다. 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을 제시하여야 하고, 보안관리대원은 방문목적 및 방문할 사람의 신분확인을 거쳐 방문증을 교부하며, 그 신분증을 보관(모바일 신분증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등 신분증을 보관할 수 없는 때에는 명함 등 대체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②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자가 종합민원실 및 법원전시관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사전 통보한 명단을 대조·확인한 후 출입시켜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출입시킬 수 있다.

③ 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에 방문증을 반납하고, 보관 중인 신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5조(법조출입기자의 출입)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각 출입구에 법조출입기자 명단을 상시 비치하고, 법조출입기자의 신원을 대조·확인한 후 청사 출입을 허용한다.

제6조(출입의 제한 등) 음식배달원,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원 등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청사 출입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청사 내 근무자의 보편적인 편의를 위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청사의 방호 및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문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청사견학 등을 목적으로 단체 방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문 전일까지 공보관실을 통하여 방문 명단 확인 등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확인된 명단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방문증 교부는 생략하고 입구에서 출구까지 담당직원이 인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표를 부착시킬 수 있다.

제8조(상시출입증의 신청·발급) ① 상시출입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 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시출입증 발급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신원조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③ 신청서 기재사항 및 신원관계 서류에 의거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한다.

④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출입증의 신청·교부) 임시출입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의해 교부하며, 그 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10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및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부서 및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6. 이 내규에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양도를 목적하거나 대여·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8.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관리·반납·회수)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거나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④ 보안관리대원은 출입인의 출입증 패용여부를 확인하여 당초 발급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하는 등 잘못된 출입증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해당 출입자를 퇴청시킨다.

제12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신고에는 분실신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수집 및 폐기) ① 대법원보안관리대는 외부인에게 상시·임시출입증을 발급하거나, 분실신고서 및 각서를 접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② 전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 관리

제1절 인원 출입관리

제14조(출입증의 패용 및 제시요구 등) ① 출입증 소지자는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한 보안관리대원과 보안 및 의전상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보안관리대원은 청사를 출입하는 자의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③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출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출입자에게 출입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청사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보안검색) ① 출입인은 검색대(문형금속탐지기)를 통과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검색대 통과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휴대용 보안검색 장비를 이용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색결과 이상이 있거나 특별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 보안관리대원은 축소검사의 시행 또는 검색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색결과 위험물품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해당 출입인에게 소지품의 임시보관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절 차량 출입관리

제16조(차량출입의 통제) ① 총무담당관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차량출입등록·적용제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차량 출입의 목적 등을 검토한 후 차량등록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차량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 차량의 청사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법원보안관리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청사출입을 위한 모든 차량은 주차게이트를 통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 청사 내로 진입할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방문목적, 방문 장소 등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한다.

④ 보안관리대원은 집회 및 시위 목적의 차량, 상행위나 개인적 용무를 위한 주차 등 불법·부당한 목적의 청사출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17조(주차장 통제 및 관리 등) ① 민원인은 종합민원실 민원업무 방문 목적에 한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종료 즉시 차량을 청사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보안관리대원은 평일 18:00 이후 또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계속 주차 중인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기 방치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대법원보안관리대에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지하주차장 이용 중 통제 또는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폰을 이용하여 보안관리대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이용 및 충전은 청사 보안 및 시설 관리(국가중요시설'가'급)를 위하여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만 가능하다. 그 외의 시간에는 차량 출입 및 충전기 이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시설 보안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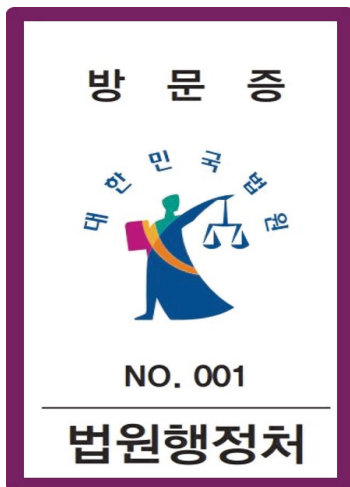
출입증 발급 대상(제3조제3항 관련)

출입증 구분	발 급 대 상 기 준
상 시 출 입 증	1. 청사관리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직원 2. 복지 후생 시설 등에 종사하는 직원 3.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 시 출 입 증	1.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나 공무원증이 미발급된 사람 2. 청사관리 용역업체 직원으로 취업 승인되었으나 출입증이 미발급된 사람 (2개월 이상 근무자)
방 문 증	1. 정당한 용무로 일시 출입하는 내·외국인

[별표 2]

방 문 증(제2조제4항 관련)**I. 전충용방문증**

1. 규 격 : 5.5cm × 8.5cm
2. 글씨체 : 견고딕체
3. 색 상 : 흰색바탕에 보라색 테두리
4. 기재사항



(후 면)
준수사항

1. 방문 시 본 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2.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방문을 마치는 즉시 반납하고 퇴청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II. 본관 방문증

1. 규 격 : 5.5cm × 8.5cm
2. 글씨체 : 견고딕체
3. 색 상 : 흰색바탕에 분홍색 테두리
4. 기재사항



(후 면)
준수사항

1. 방문 시 본 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2.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방문을 마치는 즉시 반납하고 퇴청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III. 동관·서관 방문증

1. 규 격 : 5.5cm × 8.5cm
2. 글씨체 : 견고딕체
3. 색 상 : 흰색바탕에 하늘색 테두리
4. 기재사항



(후 면)
준수사항

1. 방문 시 본 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2.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방문을 마치는 즉시 반납하고 퇴청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Ⅲ. 전시관 방문증

1. 규 격 : 5.5cm × 8.5cm
2. 글씨체 : 견고딕체
3. 색 상 : 흰색바탕에 녹색 테두리
4. 기재사항



(후 면)
준수사항

1. 방문 시 본 증을 반드시 패용해야 합니다.
2.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3. 방문을 마치는 즉시 반납하고 퇴청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청사출입증

I. 상시출입증

1. 규 격 : 5.5cm × 7.5cm
2. 글씨체 : 휴먼고딕체
3. 바탕색 : 2년 주기로 변경
4. 기재사항

대법원청사출입증
기간 : . . . ~ . . .
No. _____
법원행정처

대법원청사출입증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위 사람은 대법원청사에 출입할 수 있음을 확인함.
20
법원행정처장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II. 임시출입증

1. 규 격 : 5.5cm × 7.5cm
2. 글씨체 : 휴먼고딕체
3. 바탕색 : 회색
4. 기재사항

대법원청사임시출입증
기간 : ~
No.
법 원 행 정 처

대법원청사임시출입증
소 속 : _____
직 위 : _____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위 사람은 대법원청사에 출입 할 수 있음을 확인함.
20
법 원 행 정 처 장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방문신청서

구분	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가중요시설(대법원) 출입 통제 및 보안사고 예방, 테러 방지, 사건(사고) 발생 시 경로 파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보유기간	출입일로부터 3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방문인(본인)은 상기 내용을 이행하였으며,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연번	동의인(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동의일자	방문부서	서명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2호 서식]

상시출입증 발급신청서(신규, 재발급)

소속(주소)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출입기관 :

출입목적(재발급사유) :

위와 같이 상시 출입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 첨부서류

- | | | | |
|-----------------------------|-----|--------------------|-----|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법원 제출용) | 1통. | 2. 증명사진 | 2매. |
| 3.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 1매. | 4. 신원진술서(약식) | 1통. |
|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경찰서 제출용) | 1통. | 6.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통. |
| 7. 기본증명서(상세) | 1통. | 8.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통. |

※ 첨부서류 중 3번 내지 8번은 신원조회를 위한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소속 기관에서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회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임시출입증 교부신청서

소 · · · · · 속(주소) :

직 · · · · · 위 :

성 · · · · · 명 :

주민등록번호 :

출입기관 :

사용기간 :

출입목적 :

위와 같이 임시 출입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인)

법 원 행 정 처 장 귀하

장부대장
인사출입증

[illegible]

[별지 제6호 서식]

분 실 신 고 서

1. 분실일시 :
2. 분실장소 :
3. 분실인 :
4. 출입증 종류 :
5. 분실경위 :

20 . . .

법 원 행 정 처 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각 서

성명 : 소 속:
생년월일 :
주 소 :
출입증(방문증)번호 :

상기 본인은 20 . . .부로 교부받은 위 방문(출입)증을 분실함으로써 보안상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기에 심히 각성하오며, 차후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본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20 . . .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수집·이용 목적

-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경로 파악

② 수집·이용 항목 : 소속(주소),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록기준지,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는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보안관리 및 신원조사를 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보유기간 : 3년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④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동의 거부 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 제2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동의일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차량출입등록 · 적용제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직급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경위 파악, 차량 부제 확인 및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기관, 근무부서, 직급, 연락처(휴대전화 포함), 생년월일, 성별, 차량번호, 차명 · 보유기간 : 3년 · 동의 거부권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사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 예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5호 2026. 5. 29. 결재)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을 “정보화기획심의관(담당)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6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생 략)	제3조(주식취득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u>정보화기획심의관</u> (담당)실, 정보화심의관(담당)실, 관리운영담당 관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형사전자소송추진단	2. ----- <u>정보화기획심의</u> <u>관(담당)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실, -----</u> ----- ----- -----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6호 2026. 6. 4.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26년 6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제43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법 제 71조 제2항 제4호의 자녀 연령 및 학년요건은 휴직 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5.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이 나타나야 함) 1부와 취학 중인 자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을 소명하는 서류 1부	2. ----- ----- -----초등학교 6학 년 이하-----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신법령 목록 (2026. 5. 16. ~ 2026. 5. 31.)

법 률

법률제21648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1241	2026. 5. 19.	4
법률제21649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21650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1651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16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1653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	16
법률제216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165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0
법률제2165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1657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1659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1660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9
법률제21661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1662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42
법률제21663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4
법률제21664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	"	46
법률제21665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1666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21667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668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21241	2026. 5. 19.	50
법률제2166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51
법률제21670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1671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	"	54
법률제21672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1673호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2167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21675호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21676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21677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66
법률제21678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7
법률제2167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	"	68
법률제21680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245	2026. 5. 26.	5
법률제21681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1682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1683호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	12
법률제2168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1
법률제21685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1686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31
법률제2168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45
법률제21688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689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	"	50
법률제216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16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1692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21245	2026. 5. 26.	58
법률제216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0
법률제21694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	"	74
법률제2169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1
법률제21697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3
법률제2169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4
법률제2169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	95
법률제217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96
법률제21701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97
법률제2170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	"	"	98
법률제21703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	"	99
법률제21704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	"	100
법률제21705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104
법률제21706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05
법률제21707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	"	106
법률제21708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	107
법률제21709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	"	110
법률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21248	2026. 5. 29.	4
법률제2171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8

조 약

조약제2630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동북아사무소 및 재난 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및 운 영에 관한 협정	21243	2026. 5. 21.	4
----------	---	-------	--------------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329호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	21241	2026. 5. 19.	73
대통령령제3633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5
대통령령제36331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6
대통령령제36332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8
대통령령제36333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	"	79
대통령령제36334호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0
대통령령제3633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 령 일부개정령	"	"	83
대통령령제36336호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	"	"	84
대통령령제36337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7
대통령령제3633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8
대통령령제36339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92
대통령령제36340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3634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634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44 (별권)	2026. 5. 22.	2
대통령령제3634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6344호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45	2026. 5. 26.	111
대통령령제3634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3
대통령령제36346호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15
대통령령제36347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8
대통령령제36348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	"	"	130

대통령령제36349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45	2026. 5. 26.	132
대통령령제36350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	"	133
대통령령제36351호	조경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4
대통령령제36352호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6
대통령령제3635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7
대통령령제36354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9
대통령령제36355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1
대통령령제3635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3
대통령령제3635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4
대통령령제36358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5
대통령령제36359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7
대통령령제36360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48	2026. 5. 29.	10
대통령령제3636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11
대통령령제36362호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	"	16
대통령령제36363호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폐지령	"	"	27
대통령령제36364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8
대통령령제3636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2

총리령

총리령제2116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4	2026. 5. 22.	4
총리령제2117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8	2026. 5. 29.	33

부 령

교육부령제38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21240	2026. 5. 18.	3
국방부령제121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1	2026. 5. 19.	102
국방부령제1212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3
국토교통부령제158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4
농림축산식품부령제771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107
농림축산식품부령제770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2	2026. 5. 20.	3
행정안전부령제52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7
행정안전부령제622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8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8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3	2026. 5. 21.	32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9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4
재정경제부령제32호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	"	42
재정경제부령제3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4 (별권)	2026. 5. 22.	7
재정경제부령제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국토교통부령제158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5	2026. 5. 26.	148
국토교통부령제1586호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0
산업통상부령제1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6	2026. 5. 27.	4
국토교통부령제1587호	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1247	2026. 5. 28.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4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7	2026. 5. 28.	10
재정경제부령제3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6
고용노동부령제47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48	2026. 5. 29.	34
국토교통부령제158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	"	"	39
법무부령제111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	"	41

인사

■ 인사발령 법 제89호 | 2026. 5. 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형	2026. 5. 11.부터 2026. 11.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인사발령 법 제90호 | 2026. 5. 8.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세영	2026. 5. 12.부터 2026. 5.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1) 피교육을 명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김서현	"
	"	조용민	"
	"	현재언	"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태형	"
	"	조정용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최호열	"
	수원고등법원 판사	황창민	"
	특허법원 판사	성재혁	"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예	2026. 5. 12.부터 2026. 5.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1) 피교육을 명함
	"	한성민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승현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숙	"
	"	이지희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지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진오	"
	"	임세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허소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朴智媛)	2026. 5. 12.부터 2026. 5.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1) 피교육을 명함
	"	서영민	"
	"	유가형	"
	"	장태관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황방모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다운	"
	"	김서영	"
	"	김아영	"
	"	김진아	"
	"	전제균	"
	"	조경진	"
	수원회생법원 판사	신동욱	"
	"	윤성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손주완	"
	"	최리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김준석	"
	"	박은주	"
	"	육은령	"
	"	정희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준철	"
	"	이주황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김진하	"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
	"	양지혜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회생법원 판사	정중원	2026. 5. 12.부터 2026. 5. 15.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1) 피교육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나소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정현욱	"
	부산지방법원 판사	고병용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성준	"
	"	조현우	"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은솔	"
	창원지방법원 판사	석동우	"
	"	이큰가람	"
	"	홍진국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박연주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창환	"
	"	박경환	"
	전주지방법원 판사	김현지	"
	"	박정언	"
	제주지방법원 판사	정가원	"

■ 인사발령 법 제91호 | 2026. 5. 14.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경한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2) 피교육을 명함
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명수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2) 피교육을 명함
	"	민경준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욱	"
	대전고등법원 판사	신철민	"
	대구고등법원 판사	임현수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상욱	"
	"	이인화	"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대현	"
	"	김민아	"
	"	박건훈	"
	"	이용석	"
	"	정재우	"
	"	조수민	"
	"	홍사빈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호	"
	"	조호연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경호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2) 피교육을 명함
	"	정우택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종우	"
	"	이진석	"
	"	이호선	"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안민주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2) 피교육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대욱	"
	"	박현기	"
	"	이호태	"
	"	정수현	"
	"	최광진	"
	인천지방법원 판사	권 겐	"
	"	김현숙	"
	"	홍순건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성찬용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도완	"
	"	김동희	"
	"	김라미	"
	"	박소민	"
	"	박소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민철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2) 피교육을 명함
	"	조한기	"
	"	한지숙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
	"	김준환	"
	"	오수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락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엄현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배성준	"
	"	장혜선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황해철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조약돌	"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주원	"
	"	전보람	"
	대전가정법원 판사	박현진	"
	대전회생법원 판사	박진옥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판사	두홍륜	"
	"	박성덕	"
	"	임휘재	"
	청주지방법원 판사	박세라	"
	"	장동규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오주훈	"
	대구회생법원 판사	홍 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김규희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남명수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2) 피교육을 명함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 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희림	"
	부산가정법원 판사	전은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
	"	이유섭	"
	울산가정법원 판사	권오상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정은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김혜민	"
	"	이은숙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승균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
	"	황은정	"
	광주회생법원 판사	김경중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전솔이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국양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서동인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2026. 5. 19.부터 2026. 5. 22.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 -2) 피교육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김두일	"
	제주지방법원 판사	이슬아	"

■ 인사발령 법 제92호 | 2026. 5. 15.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복 직			
가. 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수현	복직을 명함. 6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2026. 5. 20. 자)

■ 인사발령 법 제93호 | 2026. 5.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민희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2026. 6. 8. 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연정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29.부터 2026. 12. 28.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현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8.부터 2026. 8. 23.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렬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6.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희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8.부터 2026. 7. 29.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허정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8.부터 2026. 8. 31.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보람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8.부터 2026. 8. 13.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주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1.부터 2026.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송귀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8.부터 2027. 6. 17.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8.부터 2027. 2. 21.까지 휴직을 명함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8.부터 2026. 8. 7.까지 휴직을 명함
	"	장윤식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이민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8.부터 2027. 2. 28.까지 휴직을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재익	2026. 6. 10.부터 2026. 11. 7.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장원석	2026. 6. 24.부터 2026. 7. 23.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진섭	2026. 6. 19.부터 2027. 2. 21.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남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21.부터 2026. 9. 17.까지 휴직을 명함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문선진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6.부터 2027. 9. 10.까지 휴직을 명함
	인천지방법원 판사	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17.부터 2027. 3. 15.까지 휴직을 명함
	"	최은령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8.부터 2026. 8. 18.까지 휴직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이봉재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29.부터 2027. 6. 28.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판사	정윤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24.부터 2026. 8. 31.까지 휴직을 명함
	울산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5.부터 2026. 12. 4.까지 휴직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손은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22.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신애	2026. 6. 1.부터 2026. 6. 14.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설승원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6. 18. 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주영	복직을 명함. 12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6. 22.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6. 22.부터 2026. 8. 28.까지 휴직을 명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리사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8. 자)
-------------	-----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명희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27. 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민수연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1. 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경애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23.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은정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6. 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신애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에 포함 (2026. 6. 15.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 혁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29. 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제석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에 포함 (2026. 6. 17. 자)
	부산지방법원 판사	조효빈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6. 22. 자)

■ 인사발령 법 제94호 | 2026. 5.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교육명령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택준	2026. 5. 26.부터 2026. 5.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I-1) 피교육을 명함
	"	정진화	"
나.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정영민	2026. 5. 26.부터 2026. 5.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I-1) 피교육을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신재호	2026. 5. 26.부터 2026. 5.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I-1)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고석범	"
	"	여동근	"
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2026. 5. 26.부터 2026. 5.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I-1) 피교육을 명함
	"	김효정	"
	"	노용준	"
	"	서동원	"
	"	윤영수	"
	"	이성열	"
	"	최지연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현정	2026. 5. 26.부터 2026. 5.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I-1) 피교육을 명함
	"	황일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오한승	"
	"	이창환	"
	"	한승진	"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대현	"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승현	"
	"	이준석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고철만	"
	"	문지용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희주	"
	"	박성규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
	"	박영순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디모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권순범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기호	"
	"	김은경	"
	"	박신영	"
	"	배인영	"
	"	이상언	"
	인천가정법원 판사	김재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
	수원지방법원 판사	강영선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박기범	2026. 5. 26.부터 2026. 5. 29.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경력별 연수 II-1) 피교육을 명함
	"	이규석	"
	"	조현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
	"	이순혁	"
	대전지방법원 판사	최유빈	"
	대구지방법원 판사	박가연	"
	대구회생법원 판사	육영아	"
	부산지방법원 판사	허성민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범용	"
	"	이태호	"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병호	"

■ 인사발령 법 제95호 | 2026. 5.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26. 6. 29.부터 2026. 7. 2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윤승은	2026. 6. 4.부터 2026. 7.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함상훈	2026. 6. 29.부터 2026. 7.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2026. 6. 2.부터 2026. 6. 2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2026. 6. 11.부터 2026. 7.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나.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완수	2026. 6. 26.부터 2026. 7. 2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은희	2026. 6. 29.부터 2026. 7.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임혜원	2026. 6. 22.부터 2026. 7.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전기흥	2026. 6. 8.부터 2026. 7.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최보원	2026. 6. 15.부터 2026. 7.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장한홍	2026. 6. 24.부터 2026. 7.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혜	2026. 6. 29.부터 2026. 7.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2026. 6. 1.부터 2026. 6.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선미	2026. 6. 1.부터 2026. 6.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우라옥	2026. 6. 15.부터 2026. 7.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관형	2026. 6. 6.부터 2026. 6. 19.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장성학	2026. 6. 15.부터 2026. 7.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수	2026. 6. 1.부터 2026. 6.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이평근	2026. 6. 1.부터 2026. 6. 2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영학	2026. 6. 17.부터 2026. 7.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제	2026. 6. 1.부터 2026. 6. 28.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왕정옥	2026. 6. 8.부터 2026. 7. 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라.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2026. 6. 9.부터 2026. 7. 6.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인사발령 법 제96호 | 2026. 5. 2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정기승급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선희	15호봉을 급함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위지현	14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연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도연	13호봉을 급함
	"	김희동	"
	"	배관진	"
	"	서인덕	"
	"	윤남현	"
	"	정수경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강순영	"
	"	김영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남신향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노미정	"
	"	하석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인	"
	"	이연경	"
	"	이창섭	"
	"	장유진	"
	"	조세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남수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백주연	"
	"	오흥록	"
	"	최우진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노연주	13호봉을 급함
	"	이숙미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도영오	"
	"	박현경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이수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영호	"
	"	김현정	"
	"	이누리	"
	"	정경희	"
	"	정진우	"
	"	조정환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정윤택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병만	"
	"	하세웅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김범준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공성봉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선	"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사공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이용관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배진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최현정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조현락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종환	"
	광주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용신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성구	13호봉을 급함
	"	심홍걸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전경욱	12호봉을 급함
	대구회생법원 부장판사	이효제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11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나경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장	전흔자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경미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희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부장판사	박소연	10호봉을 급함

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아	14호봉을 급함
"	김광남	13호봉을 급함
"	김진하	"
"	남기정	"
"	서전교	"
"	심승우	"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형사전자소송추진단장)	양석용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동현	"
"	이봉민	"
"	조 인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
"	이학승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전고등법원 판사	곽상호	13호봉을 급함
	대전고등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고진흥	"
	대구고등법원 판사	어재원	"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영환	"
	"	추경준	"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조미화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
	"	류희상	"
	"	신동주	"
	"	임재남	"
	"	정희엽	"
	특허법원 판사	이지영	"
다.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 교수	강동원	13호봉을 급함
	"	박병규	"
	"	윤중렬	"
	"	박정진	12호봉을 급함
라.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류준구	13호봉을 급함
	"	안금선	"
	"	장재원	"
	"	전아람	"
	"	정성민	"
	"	하종민	"
	"	윤권원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13호봉을 급함
	"	강산아	10호봉을 급함
	"	김선희	9호봉을 급함
	"	박지숙	"
마. 고등법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박민선	9호봉을 급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상욱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수민	"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선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소민	7호봉을 급함
바.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윤진	10호봉을 급함
	"	김효정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최민혜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고소영	"
	"	곽여산	"
	"	함현지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박소정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인해	"
	인천지방법원 판사	강수희	"
	"	나재영	"
	"	신세희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임영실	"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선경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회생법원 판사	오수진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보경	"
	"	이학근	"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보라	"
	대전지방법원 판사	권종현	"
	"	한지윤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국진	"
	대구지방법원 판사	손용도	"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은혜	"
	"	최지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백장미	8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정희진	"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창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우민제	7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정지백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이영주	"
	대구지방법원 판사	배종빈	"
	"	이무형	"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지혜	"
	"	임인옥	"
	"	홍정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승한	6호봉을 급함
	"	양우현	"
	"	이상수	"
	"	이유지	"
	"	임지은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안태영	6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소혜	"
	인천지방법원 판사	조현경	"
	대구지방법원 판사	이영광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의원	"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서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미영	5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장유경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유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예진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유정	"
	"	안수진	"
	대전지방법원 판사	임은정	"
	광주지방법원 판사	강서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

(2026. 6. 1. 자)



2026. 6. 15. 제1738호
Supreme Court of Korea

